

안
세
재
경
저
널

회
원
용
·
2
0
2
5
년
1
1
월
1
2
일
(수)

·
주
간
제
4
6
호

·
투
편
제
1
7
5
3

개
인
사
면
자
중
간
예
탁

안
내

TEL 30000000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5/ 11/ 12 통권 1753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주식양도세율: 개인의 주식양도소득의 과세방법과 개인·법인 비교>

주식양도 소득과 적용세율 요약	① 세율 0% : 국내상장주식의 소액주주 장내거래차익 ② 세율 10% : 대주주 아닌 자의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양도차익(소액주주+중소기업) ③ 세율 20% : 대주주인 경우 또는 중소기업 주식이 아닌 경우, 파생상품, 해외주식 ④ 세율 3억까지 20%, 3억 초과액 25% :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 ⑤ 세율 30% : 대주주 + 1년 미만 보유 + 비중소기업의 주식양도차익
개인양도차익	주주가 개인인 경우 양도차익세율은 상기 10%~30%만 적용되고, 개인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이라 4대보험 적용 안됨
법인양도소득	· 법인명의 주식거래 이익 : 법인세율 20.9%(2억까지 9%, 2억 초과 19%, 통칭 20.9%) · 법인의 세후순이익 배당 : 종합소득에 합산(배당원천징수 14% 후 합산 6%~45% 적용) · 양도차익배당액에 4대보험 적용 : 노후배당으로 국민연금 없어도 건강보험료는 부과됨 · 주식양도소득 5억인 경우 : (법인세 19% + 배당세율 78% × 40% + 4대보험 78% × 10%) × 1.1(지방소득세) ÷ 65%(최종)
법인자금 개인화	개인주식투자 사적운용시 법인공공유용임
개인자금 법인화	① 법인주식투자운용 위해 개인자금 가수금 차입 : 가능함. 개인으로는 양도세가 22%~33%이나, 법인경유소득이면 최종 합계 세금은 65%로 개인의 약 2~3배임 ② 법인의 원래 사업부가 심각한 결손인 경우만 성립 주식투자를 통한 이익과 사업 손실로 대응상계되어 법인세와 배당금이 없으므로 세금부담은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음 ③ 개인 자금의 법인대여 주식투자 양도소득방법은 극한상황에서만 성립됨

(안세회계법인대표이사박윤중공인회계사작성)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경영판단의 원칙의 실무적 이해(1)
- 매입세액불공제 되었어도 업무관련 비용은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
- 11월, 개인사업자는 중간예납 잊지 마세요
- 연말정산 꿀팁과 절세방법을 홈택스에서 미리 알아보세요
-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으로 국제행정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5월에 깜빡했다면, 12.1까지 꼭 신청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특수관계인에게 차입한 자금의 손익귀속시기가 미도래한 이자라도 건설자금 차입 이자에 해당됨 (p.11)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53호 / 주간 46호

2025. 11. 12. (수)

· 발 행 인: 이윤선
· 제 작: (주)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 FAX: (02) 718-8565

목 차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주식양도세율 : 개인의 주식양도소득의 과세방법과 개인·법인 비교	표지
CEO의 경영산책	경영판단의 원칙의 실무적 이해(1)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무슨 고민할까?)	- 임직원에게 회사가 업무에 사용하는 PC, 차량 등을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신용카드 매출전표 관련 문의 드립니다	5 6
눈에 맞는 절세미인	매입세액불공제 되었어도 업무관련 비용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7
매일 절세재무요점	- 보유세 개편 방향 -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및 의원 발의안	9 10
직장인 Survival	효과적인 목표 설정 방법 - 성과를 높이는 SMART 전략	11
최신 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출연받은 주식으로 인해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처분이익은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법규법인-2617, 2025.03.31) - 판결에 따라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함 (사전법규소득-211, 2025.04.29)	12 13
세정 뉴스와 해설	'다가온 연말정산' 홈택스 미리보기 개통... 6일부터 맞춤형 절세 안내	14
마케팅 Tax consulting	특수관계인에게 차입한 자금의 손익귀속시기가 미도래한 이자라도 건설자금 차입 이자에 해당됨	
세무정보	- 11월, 개인사업자는 중간예납 잊지 마세요 - 연말정산 꿀팁과 절세방법을 홈택스에서 미리 알아보세요 -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으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5월에 깜빡했다면, 12.1.까지 꼭 신청	15 21 28 46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

경영판단의 원칙의 실무적 이해(1)



이재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u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최근 상법 논의에서 경영진의 의사결정 위축을 막기 위해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상 명문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경영판단 원칙은 판례로 작동하나, 최근 상법 개정의 연쇄 속에 충실의무 확대에 따른 균형 장치로서의 경영판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충실의무 확대가 소송 리스크를 키워 경영 의사결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상법에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와 배임죄 요건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기업의 CEO와 관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영판단의 원칙, 주요 판례, 경영판단 원칙이 배제되는 실무적 경우, 선관주의 의무와 관계 등을 연재한다.

경영판단의 원칙의 배경

기업 경영에는 불확실성과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사후적 결과만으로 경영진의 법적 책임을 쉽게 인정하면 위험회피적 의사결정이 고착화될 수 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정보에 기초해, 선의로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믿고 내린 합리적 판단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민사책임(손해배상)을 지우지 않는다는 면책·사법심사 제한 원칙이다. 회사의 경영은 속성상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경영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져도 이사의 의사결정 당시 의사결정이 합리적이었다면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평가이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여러 국가에서 인정되는 데 미국은 판례에 의해 확립되었고 독일은 주식법(Aktiengesetz)에 성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상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으며 일본도 회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사후적으로 이사의 경영상 판단을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판단의 원칙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중요하다.

미국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의 경영상 판단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거나 또는

합리적인 제3자가 볼 때 동의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법원이 사후적으로 이사에 대해 책임을 부담시키거나 비판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이념을 기초로 한다. 미국 법원이 경영판단의 원칙을 통해 이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이유는 회사의 사업이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혁신하려는 자세와 위험을 수용하려는 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 판례법에서 발전한 Business Judgment Rule이 이사의 재량을 존중하고 법원의 사후 심사를 자제하는 기준으로 정립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판례와 학설을 통해 민사상 이사 책임뿐 아니라 형사상 업무상배임 책임 판단과의 경계에서 이 원칙이 논의되어 왔고, 사후적 손해 발생만으로 배임이나 임무해태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가 축적되고 있다.

경영판단의원칙의개념과판례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선관의무) 이사의 재량범위 내에서 행위를 했다면 비록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도 개인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민사에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따지는 기준이 되고, 형사에서는 이사의 횡령 및 배임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경영판단의 적용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사는 ① 선의(good faith)로 행동하였어야 하며, ② 합리적인 수준의 정보에 입각하여 행동하였어야 하고, ③ 자신의 행동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이사는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2002년 새마을금고사건에서 경영판단원칙을 인정하게 되었다. “대출과 관련된 경영판단을 함에 있어서 통상의 합리적인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그 상황에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 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대출 심사를 한 것이라면 그 의사결정과정에서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 임원의 경영판단은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우리 판례는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함으로써 경영판단원칙을 원용하는 판시를 하였다.

대법원은 2007년 대우사건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을 현재와 같이 확립했는데, 경영판단의 원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회사의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발행 신주를 인수함에 있어서, 관계회사의 회사 영업에 대한 기여도, 관계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적정 지원자금의 액수 및 관계회사의 지원이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관계회사를 지원할 경우와 지원하지 아닐 경우 관계회사의 회생가능성 내지

도산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회사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본 판결은 (i) 이사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 (ii)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 (iii)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는 합리적인 신뢰하는 것, (iv) 신의성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 (v)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 (vi)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인 것 등을 경영판단의 원칙의 요소로 판단하였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0월 31일 (금)	11월 3일 (월)	11월 4일 (화)	11월 5일 (수)	11월 6일 (목)
미	달	러	(USD)	1423.20	1427.40	1429.00	1437.70	1447.00
일	본	엔	(JPY)	923.62	926.10	926.69	935.61	939.43
영	국	파운	(GBP)	1872.15	1875.82	1877.35	1871.81	1888.26
캐	나	다	(CAD)	1017.73	1018.63	1016.65	1019.32	1025.66
홍	콩	달	(HKD)	183.17	183.68	183.86	184.94	186.12
중	국	원	(CNH)	200.45	200.76	200.62	201.90	202.91
유	로	화	(EUR)	1646.50	1646.72	1646.14	1650.91	1663.25
호	주	달	(AUD)	932.77	934.02	934.28	933.07	941.49
싱	가	폴	(SGD)	1094.64	1096.95	1095.31	1099.20	1107.33
말	레	이	(MYR)	338.86	340.83	340.28	342.51	345.22

임직원에게 회사가 업무에 사용하는 PC, 차량 등을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Q

(질의사항)

법인이 사용하던 PC를 임직원에게 매각시,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여 간주공급으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의 면제 조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거법률)

부가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부가세법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항 3, 부가가치세법 제10조 4항 ④

부가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3. 법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A

법인의 자산을 매각(판매)하는 경우는 법률적으로도 당연히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입니다.

다만, 임직원에게 매각(판매)이라는 법적 형식이 없이 선물 등의 개인적 목적으로 무상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세금계산서 발급은 면제 됩니다.

귀사의 경우는 개인적 목적보다는 일반 판매거래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관련 문의 드립니다

Q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법적 보관 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세법으로 규정하는 기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특정해서 일정기간 이상 보관하여야 하는 규정은 없으나, 세법에서는 국세기본법 제 85조의3에 따라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세법 규정 이외에 상법 제33조는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증요서류에 대한 10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상법에 맞춰 10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도급(시급제) 부가세 관련

Q 도급 업체에서 시급제로 추가 파트타이머를 고용했습니다.
10% 부가세는 왜 붙는건가요?
일반 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부가세 별도로 진행하는 것은 알겠는데 시급제로 진행시에도 10%부가세가 붙는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시급제로 사람을 썼을 때는 10% 부가세를 붙이지 않고 직접 근무인원에게 시급을 입금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통하게되면 10%가 붙는 것일까요?

A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규정되어 있는 재화나 용역 제외)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이 원칙이므로, 도급업체에서 귀사에게 도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로 규정(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되어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불공제 되었어도 업무관련 비용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법인세법 제21조는 법인이 지출하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이 지출한 부가가치세액의 매입세액은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 상쇄되거나, 매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아 회수되는바 결과적으로는 법인이 실제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 애초부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도 있는데, 이렇게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경우까지 손금에 반영하지 못한다면 법인의 입장에선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중 법인의 업무 관련성이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못하는 매입세액 중 손금에 반영이 가능한 항목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법인의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인정되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또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자본적 지출에 따른 매입세액은 직접 비용으로 인정받는 대신 해당 승용차의 취득원가 및 자본적지출로 반영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으로 반영된다.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지 않고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에 발생한 매입세액도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지관련비용에 대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 법인22601-1300, 1991.07.0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차량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업무추진비 등의 지출에 따른 매입세액

업무추진비(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한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는 공제되지 않으나,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당해 업무추진비(접대비) 등에 포함시켜 법인세법상의 업무추진비(접대비)의 손금인정 한도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한도초과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매입세액도 손금불산입 된다.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분도 법인의 손금으로 반영이 가능하다.

부동산의 전세금 등에 대한 매입세액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는바(부가령 제71조 6호), 거래징수당한 임차인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이렇게 임차인이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동산 임차용역의 부대비용에 해당되므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현행 법인세법상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할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만을 손금 산입 할 수 있도록 규정(법칙 §11 2호)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한 경우에도 손금산입 이 가능하다.

♣ 법인 22601-2319, 1985.7.3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하는 부가가치세 매출표준으로 하여 산출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부동산임대법인이 부담하는 때에는 이를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예정신고 기간 포함)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금계산서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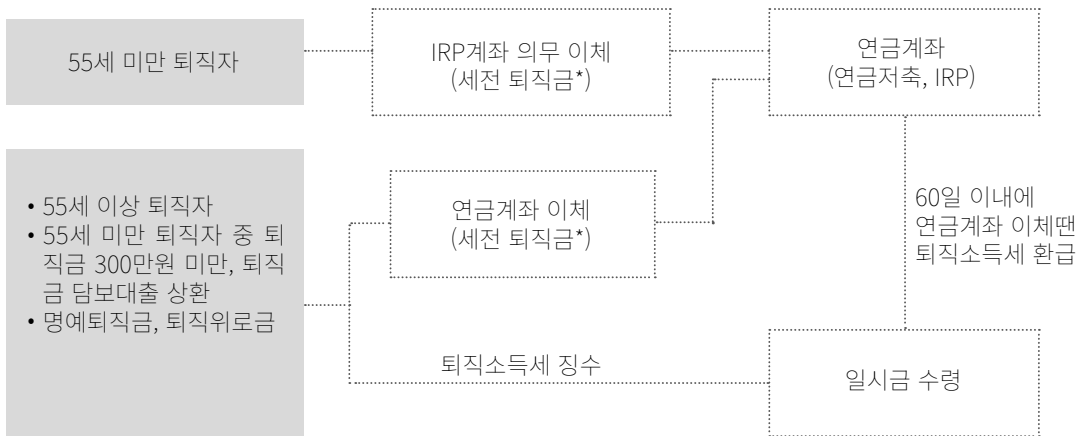
월

보유세 개편 방향

	단순화(물건 중심)	형평성(인별 중심)	혼합형(균형모델)
정책 목표	행정 효율, 예측가능성	불평등 완화, 자산조정	효율과 형평의 조화
세부담 구조	비례세	누진세	기본세+추가세
납세자 체감	단순, 이해 쉬움	복잡, 조세저항 큼	명확하되 수용성 높음
시장 영향	자산 집중 심화	투기 억제 효과	시장 안정성 강화
국제사례	일본, 미국 주정부	프랑스, 영국 중앙정보 OECD 공통 추세	

화

55세 전후로 달라지는 퇴직금 수령방법



* 퇴직소득세 미징수,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 납부

주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및 의원 발의안

법안명	정부안	국회의원 발의안
소득세법	고배당기업으로부터 개인주주가 지급받은 배당에 대해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	이소영 김현정 안도걸 임이자 유상범 윤영석 박수영 박수민 최은석 등
	고배당기업 요건 :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액 대비 배당 5% 이상 증가'를 충족한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최고세율 : 3억원 초과시 35%	
법인세법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1%p 인상	김기표 안도걸 윤준병 윤종오 김미애 최은석 등
증권거래세법	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율 0.05%p 인상	김미애
교육세법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에 '수익금 1조 원 초과'구간 신설 및 세율 0.5%p 인상	박수영 최은석

목

연금계좌 납입 시작 연령별 예상 연금 수령액

※ 매월 납입금액 50만원, 기대수익률 6%, 55세까지 납입 후 5년 거치 가정

구분	60세 총 누적자산	납입원금	운용수익 기준	매월 인출가능 금액 (60~90세)
35세부터 납입	3억 1308만 6385원	1억2000만원	1억9308만6385원	187만 7111원
45세부터 납입	1억1218만 3257원	6000만원	5218만 3257원	67만 2595원
50세부터 납입	4797만 7945원	3000만원	1797만 7945원	28만 7652원



효과적인 목표 설정 방법 - 성과를 높이는 SMART 전략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은 '명확한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가 모호하면 방향을 잃기 쉽고, 작은 성과에도 동기부여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반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는 집중력을 높이고, 스스로의 진척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널리 활용되는 기준이 바로 SMART 원칙입니다.

Specific(구체적일 것)

'매출을 올리겠다' 보다는 '이번 분기 매출을 10% 향상시키겠다' 처럼 목표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목표일수록 실천 계획을 세우기가 쉽습니다.

Measurable(측정 가능할 것)

진행 상황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수치나 기준을 설정합니다. '만족도 향상' 대신 '고객 만족도 90점 이상 달성' 처럼요.

Achievable(달성 가능할 것)

지나치게 높은 목표는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현실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evant(관련성이 있을 것)

개인의 업무가 조직의 큰 목표와 연결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목표가 조직의 비전과 맞닿아 있을 때, 구성원은 자신의 역할에 더 큰 가치를 느낍니다.

Time-bound(기한이 있을 것)

목표에는 반드시 '언제까지'라는 시간 제한이 필요합니다. 마감의 있어야 집중도가 높아지고, 성과 관리도 명확해집니다.

최신 판례 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특수관계인에게 차입한 자금의 손익귀속시기가 미도래한 이자라도 건설자금 차입 이자에 해당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건설자금을 차입하고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가 미도래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도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는지? →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됨

서면법규법인-4434, 2025.04.17

질 의

- 질의법인은 물류서비스업을 영위를 위해 '21.7월 설립된 법인으로 물류창고 건축을 위해 특수관계인로부터 000억원을 차입하였음
- * 질의서에 따르면, 건설기간은 2022.1.1. 2024.12.31.로 전제되어 있음
- 당초 차입일은 '21.10.5.이고 만기는 '22.9.30.이며 이자는 만기에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2.5.20.에 계약을 변경하여 만기를 '25.12.31.로 연장하였음

질의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용 유형자산의 건설자금을 차입한 경우로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 건설기간 동안 발생한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미도래 지급이자」가 법인법 28①(3)에 따른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사업용 유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이하 '건설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인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발생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총당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것임

출연받은 주식으로 인해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처분이익은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법규법인-2617, 2025.03.31

질 의

- 공익법인인 질의법인은 설립 당시 A법인의 발행주식을 출연받아 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중
 - A법인의 주주로서 상법 418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이익이 발생함

질의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처분이익이 운용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신주인수권을 「상법」제420조의3에 따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운용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판결에 따라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함

사전법규소득-211, 2025.04.29

■ 질 의

- 질의법인은 질의법인의 근로자 44명(이하 '원고들') 과 임금 소송을 진행 중임
 - 1심 법원은 20x1.x.xx.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 선고함
 - 질의법인은 20x1.x.xx. 위 판결에 항소하면서, 20x1.x.xx. 1심 판결에 따른 금액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은 지급액을 반환하여
 - 20x1.x.xx. 1심 판결금과 공탁일까지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원고들에 대해 개별 변제공탁함

질의

- 질의법인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탁하는 경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시기가 공탁일인지 판결 확정일인지

■ 회 신

사용자가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경우

1.임금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과세기간 별로 「소득세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2.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판결 확정에 따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후 동일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에 대한 연결납세 적용방법 →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함이 타당

사전법규법인-222, 2025.05.29

■ 질 의

- (현황) 연결모법인인 A법인은 '23사업연도까지 B법인을 연결자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 적용
- (자회사 인수) 2024.11.xx. A법인은 C법인의 주식 100%를 인수
- (연결자법인 흡수합병) 2024.12.xx. A법인은 C법인 인수 직후 기존 연결자법인인 B법인을 흡수합병

질의

-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후 동일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에 대한 연결납세 적용방법

■ 회 신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라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을 연결자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6 제1항에 따라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임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다가온 연말정산’ 홈택스 미리보기 개통... 6일부터 맞춤형 절세 안내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

6일부터는 절세계획에 도움되는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모의 계산해보고, 이를 통해 연말 소비·저축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예상세액’은 올해 1~9월간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활용해 계산한다.

결혼·출산 등으로 인한 부양가족 변경과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동에 따라 연말정산 세액을 모의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익숙하지 않은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함께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팁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맞춤형 안내는 과거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받을 가능성이 큰 근로자 52만명에게 절세 팁을 제공한다.

무주택 근로자 15만명이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를 받는다. 안내대상을 전년 대비 80%나 늘렸다.

이밖에 연말정산 때 문의가 많은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한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에 연락하면 된다.

기왕 쓸 거면 현금카드로... 홈택스 연말정산 예상세액 ‘쓸쓸’

연말시즌에 맞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늘 개통됐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선 올해 1~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10월 이후 지출 예상 금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라 절감 가능한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 공제는 전체 씬씀이에서 공제 제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씬씀이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카드 등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공제 제외 금액은 총급여의 25%인 1250만원이다.

그리고 전체 사용금액이 1800만원이고, 이중 신용카드 금액이 800만원, 현금 사용액이 1000만원이라면, 165만원 공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공제 제외 금액인 1250만원을 빼 나머지가 550만원이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인데, 공제 제외 금액을 계산할 때는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빼고, 공제율이 높은 씬씀이만 남겨 실제 공제를 준다.

그래서 1250만원에서 신용카드 사용분 800만원을 빼고, 추가로 현금사용액 450만원을 빼면, 나머지 현금 사용분 550만원만 남아 550만원에 대한 30% 공제, 165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만일 올해 연봉이 6000만원이라면, 공제 제외 금액은 1500만원이 된다.

2200만원을 썼다면, 1500만원을 제한 700만원 지출에 대해 공제를 받는데, 이 말은 거꾸로 1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700만원부터는 현금 등 공제율이 높은 수단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다만, 신용카드로 썼다고 해도 문화체육사용분은 30% 공제율을 받고,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은 40% 공제를 받으니 자신의 지출 상황에 따라 지출 방법을 바꿔 쓰면 보다 높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억대 주식투자한 대리 티켓팅 압표상... 국세청 세무조사로 철퇴

국세청이 거액의 압표수익으로 주식투자를 한 대리 티켓팅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EEE는 티켓 예매 의뢰자에게 공연·스포츠 입장권을 확보해 주고 건당 10만원 상당의 성공 수수료를 수취하는 대리 티켓팅업자로, 1인당 예매 입장권 수가 제한된 티켓 예매처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및 10여 개가 넘는 사용자 계정을 활용, 6개월간 1200여건에 이르는 압표를 대리 티켓팅했다.

1:1 채팅이 가능한 SNS를 통해 차명계좌 번호를 안내하여 현금으로 대금을 수취하며 해당 수익을 신고 누락하고, 은닉한 수입금액을 재원으로 동업자와 함께 12억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월, 개인사업자는 중간예납 잊지 마세요

- 국세청, 2025. 11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로,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1.3.(월)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4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며, 납부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 사업소득이 없는 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신규 사업자 등
 -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12.1.(월)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12.1.(월)까지 추계액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또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액 신고만 하고 실제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text{중간예납 추계액} = \left[\left(\frac{\text{올해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times 2}{\text{이월 결산금}} - \frac{\text{이월 종합소득 공제}}{\text{기본 세율}} \right) \times \text{기분} \right] \div 2 - \text{올해 상반기 세액공제} \cdot \text{기납부세액}$$

- 중간예납 추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추계액 신고방법은 붙임1 참조).

|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 사례 |

- 도매업을 영위하는 A씨는 2025년 귀속 중간예납세액으로 75만 원(=전년도 종합소득세액 150만 원 ÷ 2)을 고지받았습니다.
- A씨는 전년에 비해 올해 사업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해 보았더니 30만 원이 나왔습니다.
- 중간예납 추계액(30만 원)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150만 원)의 30%에 미달하므로 A씨는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A씨의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		추계액 신고 가능 여부	
①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7,000,000원	⑨ 전년도 종합소득세액	1,500,000원
② 종합소득 연간 환산액 (①×2)	14,000,000원	⑩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	450,000원
③ 종합소득공제	1,500,000원	→ ⑧ 중간예납 추계액(300,000원)이 ⑩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450,000원)보다 적어 추계액 신고 가능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 (②-③)	12,500,000원		
⑤ 산출세액 (④×기본세율)	750,000원		
⑥ 올해 상반기분 산출세액 (⑤÷2)	375,000원		
⑦ 세액공제·기납부세액	75,000원		
⑧ 중간예납 추계액(⑥-⑦)	300,000원		

-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 혹은 신고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2.2.(월)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 * 중간예납세액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중간예납세액 2천만 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금액
- 또한, 자연재해 및 사업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적극 연장할 예정입니다.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12.1.(월)까지 납부하세요

- (중간예납 대상)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11.3.(월)부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며, 납부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2.1.(월)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 중간예납세액 미납시 납부지연가산세(3% + 1일당 0.022%)가 부과되므로 주의
- 다만, 다음의 경우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므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중간예납세액 고지 제외자 |

-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 ▶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 ▶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 ▶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원 등
- ▶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중간예납기간 종료일('25.6.30.) 이전 휴·폐업자
- ▶ '24.12.31. 현재 비사업자로서 '25년 중 신규 사업 개시자

□ (중간예납세액)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1/2이며, 올해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text{중간예납세액} = \text{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 (= \text{중간예납기준액}^*) \times 1/2$$

* 중간예납 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 납부세액	+	결정수정신고 등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가산세포함)	-	환급세액
---------------	---	---------------	---	--------------	---	--------------------------------	---	------

| 중간예납세액 계산 사례 |

- 작년 11월 중간예납세액 2백만 원을 고지받아 납부하였고, 올해 5월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6백만 원을 납부한 A씨가
→ 올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은 4백만 원입니다.

- 중간예납세액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 x 1/2
= (2,000,000원 + 6,000,000원) x 1/2 = 4,000,000원

□ (고지세액 조회)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편리하게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손택스 조회 경로 |

-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확인
또는, 로그인 → My홈택스 → 고지

- ▶ (손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 압류재산 내역 → 고지 탭 선택

□ (납부방법) 납부고지서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2

올해 사업이 힘들었다면 추계액 신고 해보세요

- (추계액 신고)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2025.1.1.~ 6.30.) 사업실적이 줄어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도 가능합니다.
-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2025년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2.1.(월)까지 추계액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추계액이 소액인 경우) 계산된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추계액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 (의무적 추계신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이 없으나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 *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 원 이상
 - 음식, 숙박, 제조, 건설, 금융업 등: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 이상
 - 서비스, 보건, 부동산임대업 등: 직전연도 수입금액 7천 5백만 원 이상
 - 전문직(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수입금액 관계 없이 복식부기 의무자
- (추계액 신고 방법)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서면 신고서를 제출해도 됩니다(상세 신고요령은 붙임1).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경로 |

-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 ▶ (손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 (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 X) 지방소득세에는 중간예납 제도가 없으므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3

중간예납세액이 부담된다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 중간예납 고지세액 또는 중간예납 추계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만 12.1.(월)까지 납부하고,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 초에 발송되는 고지서로 내년 2.2.(월)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 분납 가능한 금액과 예시 |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분납 가능

	중간예납세액	납부세액 (납부기한 2025.12.1.)	분납세액 (납부기한 2026.2.2.)
사례①	12,500,000원	10,000,000원	2,500,000원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납 가능

	중간예납세액	납부세액 (납부기한 2025.12.1.)	분납세액 (납부기한 2026.2.2.)
사례②	2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사례③	35,000,010원	17,500,010원	17,500,000원

4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

- (대상) 태풍·집중호우 등 재난·재해 및 사업상 부진 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겠습니다.
-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붙임2 참조).
- 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재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당초 납부기한 연장 기간 포함) 연장 가능합니다.
 - * (25.3월) 경기·경남등 4개 지자체 內 10개 읍·면·동, (25.7~8월) 경기·충남 등 9개 지자체 內 43곳 등
-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산적 중소기업* 등은 1억 원, 그 외 사업자는 7천만 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됩니다.
 - * 생산적 중소기업 :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붙임 1 - 중간예납 추계액 전자신고 방법

홈택스

○ 홈택스 접속(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화면하단)

입력
방법

1.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 클릭한 후 전화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없는 경우 "없음" 선택)
2. 신고사유2 선택(전년 실적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액 신고하는 경우 신고사유1)
3. '저장후 다음이동' 클릭하여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입력 후 신고서 작성

손택스

○ 손택스 접속(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입력
방법

1. 주민등록번호 옆 '확인' 클릭한 후 전화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없는 경우 "없음" 선택)
2. 신고사유2 선택(전년 실적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액 신고하는 경우 신고사유1)
3. '저장후 다음' 클릭하여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입력 후 신고서 작성

붙임 2 -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신청 경로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하기

- ① 홈택스 접속(로그인) → ② 증명·등록·신청 → ③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④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 조회 → ⑤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신청(구.징수유예)

○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신청하기

- ① 손택스 접속(로그인) → ② 전체메뉴 → ③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④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⑤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구.징수유예) 신청

연말정산 꿀팁과 절세방법을 홈택스에서 미리 알아보세요

- 국세청, 2025. 11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2천만 근로자를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1. 5.(수) 개통하고,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11.6.(목) 부터 내년 1.31.까지 제공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25년 1~9월간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이용하여 '26.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보고, 연말 소비·저축 계획을 알뜰히 세워볼 수 있습니다.
 - 결혼·출산 등으로 인한 부양가족 변경과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동이 연말정산 세액에 미치는 영향까지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익숙하지 않은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함께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팁도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경로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합니다.
- 올해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안내를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였으며 (안내대상 : '24년 8만 명 → '25년 15만 명, 80%↑),
 - 연말정산 내역 및 학자금 상환이력 등 내·외부 자료를 폭넓게 분석해 연말정산 때 문의가 많은 7가지 공제·감면 항목에 대해 안내합니다.

기부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	월세액 세액공제
교육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주택마련저축		[확대]

* (안내방법)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를 이용한 모바일 안내, 홈택스 미리보기 (PC)안내 병행



-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에서 보다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00% 활용하기

1 단계

전년도 지급명세서 확인하고 올해 예상 연봉금액 입력

-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여 '25년 1월에 신고한 '24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항목과 금액을 불러오고, 올해의 예상 연봉 총액(총급여)과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을 작성합니다.
- '25년 1월 ~ 9월간 실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10월 이후 지출 예상 금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라 절감 가능한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미리보기 예상 절감세액 안내 예시 |

• 예상 절감세액

10월부터 12월까지 19,400,000원을 추가로 사용하면 예상 세액이 196,800원 줄어듭니다.

- 연말까지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항목별로 수정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또는 현금영수증) 중 어떤 지출수단을 얼마나 이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때 유리한 지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사례

작년보다 연봉도 오르고 지출도 늘어난 근로자 김원천씨의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24년	'25년
총급여 5천만 원 신용카드 800만 원, 현금영수증 1,000만 원 사용 → 165만 원 소득공제	총급여 6천만 원 신용카드 900만 원, 현금영수증 1,300만 원 사용 → 210만 원 소득공제 (45만원 ↑)
① 전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1,800만원 ② 공제 제외 금액 : 총급여의 25% (1,250만원) = 신용카드 800만원 + 현금영수증 450만원 ③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 (①-②)×30% = (1,800만원 - 1,250만원)×30% = 165만 원	① 전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2,200만원 ② 공제 제외 금액 : 총급여의 25% (1,500만원) = 신용카드 900만원 + 현금영수증 600만원 ③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 (①-②)×30% = (2,200만원 - 1,500만원)×30% = 210만 원

- 1) 지출수단별 공제율 : 신용카드 사용분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 3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문화체육사용분은 30%,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은 40% 공제
- 2) 공제제외금액 산정 시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제외합니다.

2 단계 공제·감면명세 확인 및 수정입력

- 주택자금이나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공제항목별로 예상 연간지출액을 입력하여 올해 세법에 맞는 예상 소득·세액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저축과 절세 계획을 한번에 수립할 수 있습니다.

'25년부터 확대되는 주요 연말정산 공제 혜택

✓ [주택마련저축]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대상 포함

- 세대주 본인만 가능 → (개정)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 가능

✓ [자녀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라 10만원씩 세액공제 금액 상향

- (1명·2명·3명 이상) 15·20·30만원 → (개정) 25·30·40만원
- * [예시] 자녀가 3명인 경우 (중전) 65만원 → (개정) 95만원(25+35+40만원)

✓ [고향사랑기부금] 특별재난지역 기부분 공제율 및 전체 공제한도 상향

- 10만원 초과 시 15%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기부분 100/110) → 특별재난지역 기부금 (선포일부부터 3개월 이내 기부분) 중 10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 기부한도 금액 500만원 → 기부한도 금액 2,000만원

3 단계 항목별 3개년 추이 및 유의사항 확인

- 최근 3년간 총급여와 주요 항목별 공제금액·결정세액의 증감을 그래프로 한눈에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과다공제를 예방하기 위한 공제항목별 유의사항과 절세 팁을 제공하여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별 주요 절세 Tip·유의사항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해당 금융회사에서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기존 차입금 잔액 한도로 공제 가능
- ✓ (신용카드) 자동차 구입, 보험료·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과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 → 소득공제 불가
- ✓ (교육비) 유치원(어린이집)에 지출한 입학금, 방과후 특별활동비(도서 포함, 재료비 제외)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차량운행비, 앨범비 등은 공제 불가)

2

다양한 공제 혜택, 필요한 것만 쓱쓱 맞춤형으로 안내합니다

-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로 요건을 충족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을 선정해 11.6.(목)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맞춤형 안내를 통해 근로자별로 연말정산 때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에 대한 적용요건과 필요 증빙을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1.31. 까지 확인 가능)
 - * (1차) 카카오톡 발송 (2차) 1차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네이버 전자문서 추가 발송
- 월세·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문의가 많은 7가지 공제·감면을 선정하여 안내하므로, 미리 확인하여 공제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맞춤형 안내 사례

□ '25년 초 중소기업에 취업하면서 회사 인근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내고 자취를 시작한 청년 근로자 김원천 씨는 연말정산 때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어렵고 막막하기만 했다.

- 국세청에서 '25년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병역 이행자료, 임대차계약 신고내역을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김원천 씨는 ①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②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았고,
- '25.11월 초 김원천 씨는 국세청이 발송한 「맞춤형 안내」로 요건을 확인하여 '26.1월 연말정산부터 세액감면·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주의] 다만 맞춤형 안내 대상 분석시점과 실제 연말정산 시점 간 차이로 연도말(12.31.) 기준으로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완료 전에 한번 더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11월 안내 시 무주택이었으나 12.31. 주택 취득자 → 주택임차차임금·월세액 공제 불가

참고 1 -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한 저축&절세계획 수립 사례

✓사례 1

연봉 5천만 원인 근로자 김원천 씨(32세)는 이달 말이 만기인 예금(또는 적금)이 500만 원 있다. 목돈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절세에 활용할 수는 없을까?

(소득세율 15% 적용을 가정)

<p>① 연금저축계좌에 500만 원을 납입했을 때</p> <p>☞ 납입액 500만 원×15%*</p> <p>*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시 12% 공제율 적용</p>	<p>→</p> <p>75만 원 세액공제</p>
<p>② 주택청약종합저축에 500만 원을 납입했을 때</p> <p>☞ 공제 가능한 청약저축 납입액 한도 300만 원×40% = 120만 원 소득공제 → 120만 원× 소득세율 15%</p>	<p>→</p> <p>18만 원 세액공제</p>
<p>③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500만 원을 넣었을 때</p> <p>☞ 공제대상 납입금액 500만 원×40% = 200만 원 소득공제 → 200만 원 × 소득세율 15%</p> <p>* 19 ~ 34세 근로자에 한해 가입 가능, 연간 공제대상 납입 한도는 600만 원</p>	<p>→</p> <p>30만 원 세액공제</p>

[⚠]유의사항

- ①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은 연금외 수령시 15% 기타소득세 과세
-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6% 가산세 (감면받은 세액 한도)
- ③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여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해지 시 6% 가산세 (감면받은 세액 한도)

✓ 사례 2

원하는 지역에 기부도 하고, 답례품이랑 연말정산 환급도 모두 다 챙기고 싶다!
(기부금액 50만 원을 가정)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했을 때

$$(10\text{만 원} \times 100/110) + (40\text{만 원} \times 15\%)$$

= 15만 원 세액공제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했을 때

$$(10\text{만 원} \times 100/110) + (40\text{만 원} \times 30\%)$$

= 21만 원 세액공제

* 고향사랑 기부금의 지역별 답례품은 재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기부금액의 30%에 상응하는 품목으로 제공되며, 주민등록지 외의 지역에만 기부 가능

참고 2 - 자주 묻는 질문

1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계산해보니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럼 이번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작년('24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기초로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하는 것이므로, 연봉·지출의 변동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연도 말('25.12.31.)기준으로 요건충족 여부를 꼼꼼히 다시 확인한 후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조회되지 않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신용카드사에서 일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을 수 있으나, '26.1월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자료를 정상 수집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올해 20살이 된 자녀의 자료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올해 성년이 된 자녀('06년생)를 포함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해당 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 미성년 자녀 ('07.1.1. 이후 출생)는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화면에서 「미성년자녀 신청」을 선택하여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부모 본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4 맞춤형 안내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로만 받을 수 있나요

-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는 11.6.(목) 카카오톡으로 1차 전송 후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2차로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합니다.
 - 문자메시지(SMS)나 전화 통화로는 안내하고 있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스미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으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 국세청, 2025. 11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1.3.(월) 정부세종2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역점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로 진행하였으며,
 -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과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출범을 맞아 업무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는 발대식을 함께 실시하였다.
 - 중점과제로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등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혁신방안들을 논의했다.

- 먼저, 납세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고, 국세행정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AI 대전환으로 국세행정을 전면 혁신하기로 했다.
 - 그동안 복잡한 세법과 절차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었던 납세자를 위해 세무 전문가 수준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탈세적발과 체납관리도 사람 중심에서 AI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역량을 극대화한다.
 -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GPU 확보·생성형 AI 모델 도입을 신속히 진행하고, 3대 분야(납세서비스/공정과세/세정역량)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개발하여 2028년부터 본격 AI 국세행정 서비스를 개시한다.
 - 과제개발 컨트롤타워로 「AI 대전환 추진단」을 가동하고, 인력확보·보안체계 고도화·데이터 관리 등 AI 대전환을 위한 기반도 치밀하게 준비한다.

- 다음으로,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따뜻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펼쳐하기로 하였다.
 - 경기침체, 재난·재해로 어려운 납세자에게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영세자영업자의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한편, 인적용역 소득자가 소득세 환급금을 빠짐없이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AI 등 신산업 기업과 관세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중과세 문제 등 해외 진출기업의 고충은 전략적 APA 실시 및 양자교류·다자회의체 참여와 같은 실용적 세정외교로 해결한다.
- 특히, 중소기업 우수 주류를 발굴하여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K-SUUL AWARD」를 개최하고, APEC 등 국제행사를 통해 우리 술을 적극 홍보한다.

※ 참가신청(9.1~9.15.) 결과 175개 중소기업에서 366개 제품을 출품하였으며, 2차에 걸친 심사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12개 제품 선정하고 12월 발표 예정

- 아울러,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조사를 최대한 축소하는 등 납세자가 불편을 겪었던 낡은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을 확대하여 세무조사 과정도 세심하게 관리한다.

□ 그리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더욱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면서도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을 적극 구현하기로 하였다.

- 우선,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여 체납자 133만명의 생활실태를 모두 확인하고, 체납자 여건에 따라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한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악의적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하게 대응한다.
-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하여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 → 추적조사 → 체납징수’의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실시한다.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개요〉
 ▶(구성) 서울청·중부청 각 2반, 나머지 5개 지방청 각 1반 설치(1반당 6명씩 총 54명)
 ▶(역할) 실태확인부터 압류·계좌추적, 현장수색, 징수·정리보류까지 전 과정 담당

- 한편,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약 14,000건)을 유지하면서 유연하게 운영하고, 납세자의 단순한 신고 실수는 바로 잡도록 성실신고로 안내하는 등 세무조사가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한다.
- 다만, 민생침해, 역외탈세, 불공정행위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한 불이익을 받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조사한다.
- 특히,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법인 관련 국내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하였다. 캄보디아 법인의 국내 거점은 물론,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국내 관련인의 탈세혐의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한다.

□ 아울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신뢰

- 가 굳건하게 뿌리내린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 우선,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을 출범하고, 청사 안전요원을 전 관서에 배치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25년 60개 관서 → '26년 76개 관서)해 나간다.
 - 또한, 부과·징수·송무 분야 성과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고,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해 전보 및 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성과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마지막으로, 이상의 혁신과제들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을 선발, 전용 소통창구를 개설하여 주요과제를 알기 쉽게 공유하고 활발한 의견개진을 유도한다.
- 임광현 국세청장은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세행정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국세행정의 변화가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전심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참고 1 - 국세행정 AI 전환을 위한 연도별 추진 전략

국세행정 AI 전환을 위한 연도별 추진전략			
	'25년	'26년	'27년
추진 전략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	AI 인프라 도입
	빅데이터 기반 신고검증 도입	빅데이터 기반 신고검증 확대	AI 활용 핵심과제 개발
추진 과제	머신러닝 기반 조사분석 통합관리·체납자 추적조사 통합분석 서비스 개발	머신러닝 기반 조사분석 통합관리·체납자 추적조사 통합분석 서비스 고도화	납세서비스 혁신 - AI 신고서 어시스턴트 개발 - 세무컨설팅 서비스 개발 공정과세 구현 - AI 체납관리 어시스턴트 구축 - AI 탈세적발 시스템 개발 세정 효율화 - AI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	⋮	⋮
	 국세청 Korea Tax Service		

참고 2 - 「2025 K-SUUL AWARD」 심사계획

2025 K-SUUL AWARD 심사계획

01
심사방법 국민심사단, 기업심사단, 자문심사단, 내부 심사단

02
1차심사(10.28) 40개(부문별 10개) 선정
⇓
2차심사(11.14) 12개(부문별 3개) 선정

03
12월 초 개최 예정
「K-SUUL AWARD」 행사
최종 12개 수상주류 발표 및 시음홍보

참고 3 - 상주조사 최소화 운영방안

상주조사 최소화 운영방안

납세자 협력도에 따라
상주기간 최소화 운영

원칙

- 사전통지 시 현장 상주조사 감축안내
- 착수 이후 자료준비가 충실히 이루어진 경우
조사관서 조사로 전환

자료제출 비협조 등 필요성 인정 시
현장출장 재개가능

예외

- 자료은닉 등 불성실 행태 발생하는 경우
현장조사 재개하여 엄정대응
- 인터뷰, 통지서 송달 등
대면이 필요한 경우 일회성 출장가능

참고 4 - 체납관리 방안

체납관리 방안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


체납자 전수 실태확인 (133만명, 110조원)

- 3년간('26~'28) 실태확인 종사자 2천명 채용
- 체납사실 안내, 실태확인, 납부계획 확인 등
- 고의적납부기피자, 일시적 납부곤란자, 생계곤란형 체납자로 분류하여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

고액체납 신속대응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가동

고액체납이 발생하는 즉시,
실태확인 » 추적조사 » 체납징수
논스톱으로 실시



참고 5 -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주요역할 및 업무범위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주요역할 및 업무범위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구성

담당업무 및 운영방법

주요역할 >>> 법률상담, 고발 검토, 고발장·답변서 작성, 수사기관 동행, 악성민원 대응사례 교육·공유

업무범위 >>> 법적 대응이 필요한 **위법민원**, **피소** 및 **부당민원**

위법민원	폭언형(욕설, 모욕, 협박) 폭력형(폭행, 기물파손 등)
피소	정상적 업무수행 중 피소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부당민원	반복민원, 장시간 민원, 부당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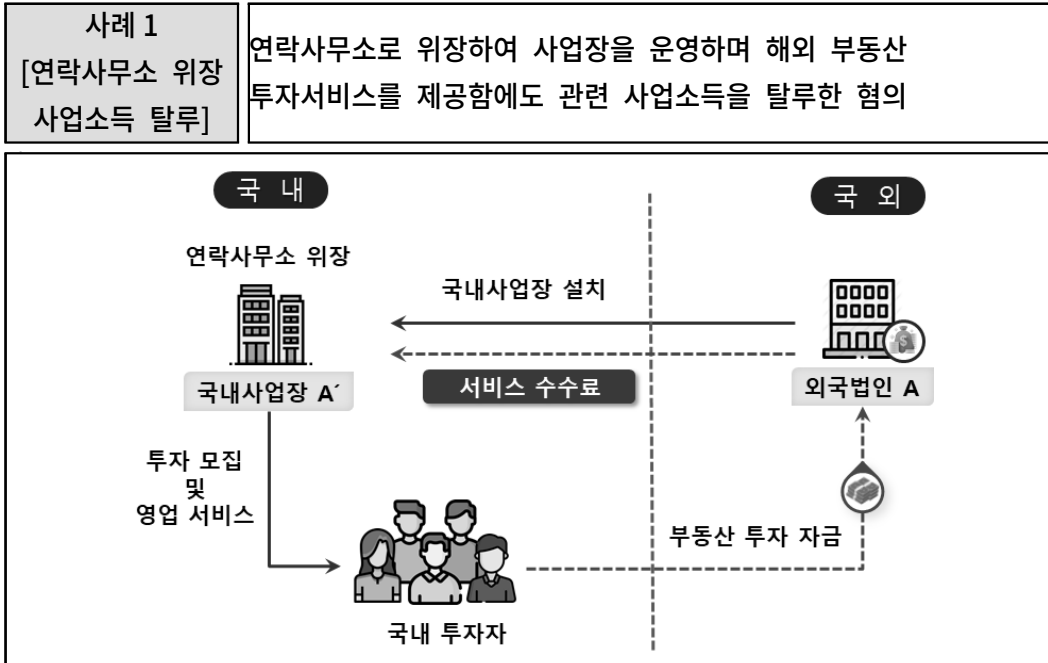


참고 6 -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신설 관련 악성민원 사례

- (사례1) 폭행 및 십여년간 수차례 고소 당한 A 조사관, 정신적 스트레스 극에 달해...
 - 2014년 지방청 송무과에서 조세소송 업무를 수행하던 A 조사관은 세금 고지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민원인으로부터 머리를 맞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집으로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도 받았다.
 - 이 외에도 민원인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십여년간 3차례에 걸쳐 A 조사관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사기미수 혐의,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3차례 모두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 폭행 및 3차례 피소로 인해 A 조사관은 최근까지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안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사례2) 업무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수년간 수십차례 항의 방문 및 고소·협박, 담당 과장은 스트레스로 퇴직까지...
 - 2019년 민원인은 본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처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자, 수십차례에 걸쳐 세무서를 방문하여 고성으로 욕설·협박하며 재조사할 것을 지속 요구하였다. 직원들이 기억하는 방문 횟수만 43회에 이른다.
 - 또한, 민원인은 세무서장 등을 검찰, 감사원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 신고하였다. 검찰고소는 각하되었고 감사원 신고는 무혐의 처분되었다.
 - 이뿐만이 아니다. 민원인은 세무서장 앞으로 ‘칼, 창 등 극언이 담긴 문서’를 보내기도 하였다. 2024년에는 민원에 시달린 세무서 담당과장이 심한 불면증과 스트레스로 퇴직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해당 민원인은 최근에도 동일 내용의 탈세제보서를 제출하고 있다.

참고 7 - 캄보디아 스캠 범죄 관련 조사사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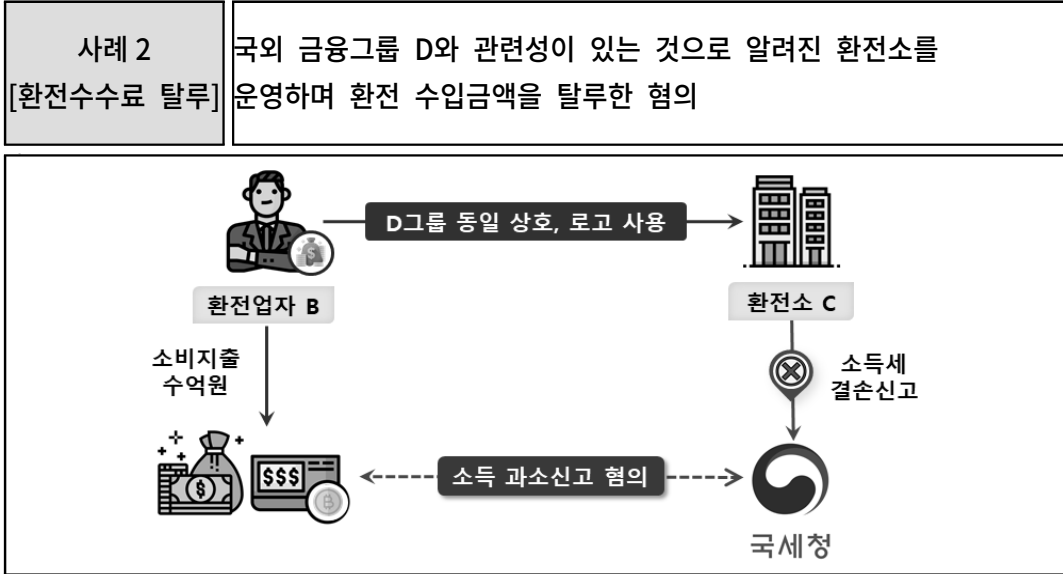
□ 주요 탈루혐의

- 외국법인 A는 서울 핵심 상업지에 해외 부동산 투자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영업직 임직원을 채용하여 이들을 통해 국내 사업을 영위하고도
 - 단순 연락사무소로 위장하여 국내 발생 사업소득과 영업직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음
- 특히, A는 국내 투자자로부터 인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투자 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국외 송금하였으나,
 - 국내 투자자들의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외 부동산 투자로 가장하여 피싱 범죄수익 등을 국외 유출한 혐의 있음

□ 조사 방향

- 국내 발생 서비스 수익을 무신고한 ①외국법인 A 및 A로부터 보수를 받고도 무신고한 ②임직원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통해 제세 추징하는 한편,
 - 범죄 연관성이 확인되는 경우 국외 유출된 범죄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

참고 8 - 캄보디아 스캠 범죄 관련 조사사례(2)



□ 주요 탈루혐의

- 내국인 B는 불법 자금세탁 의혹을 받고 있는 국외 금융그룹 D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환전소(C)를 운영하면서 환전실적을 축소신고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과소신고한 혐의 있음
- B는 환전소 운영과 소규모 인적용역소득 외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자로,
 - 최근 5년간 환전소 운영 관련 매년 결손(-)으로 신고하였으나, 소비지출액이 수 억원으로 확인되는 등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으며,
 - 환전소 인수 이후 수 차례(체류기간 000일)에 걸쳐 국외로 출입국하는 등 사업활동이 국외 금융기관 D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

□ 조사방향

- 환전수수료 수입 탈루 혐의에 대한 조사와 함께 환전거래내역의 추적조사를 통해 불법자금 세탁 등 범죄 관련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 예정



국세행정 운영방안

1 그간의 추진성과

①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 조달 노력

- 글로벌 무역 긴장 심화, 경제성장을 둔화 등 어려운 세입여건에도 내실있는 세정 집행으로 소관 세입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 홈택스를 납세자가 필요한 내용을 알아서 보여주는 개인 맞춤형 포털로 개편하고, AI 전화상담을 전국 세무서로 확대하여 신고·납부 편의 제고
-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연말정산 서비스 개편*으로 과다공제를 원천 차단하여 세수 증대
 - * 소득기준 초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는 417만명의 명단을 간소화자료로 제공 등

② 민생 회복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

- 내수회복 지원, 통상환경 급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수출기업과 재난·재해 피해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 실시
- 반기 장려금 환수기간 연장(5년→10년)으로 미환수액 고지를 연기하고,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미납액 연체·가산금 부과율과 연체금 한도 인하*
 - * (연체금) 3% → 2%, (연체가산금) 월 1.2% → 0.5%, (한도) 9%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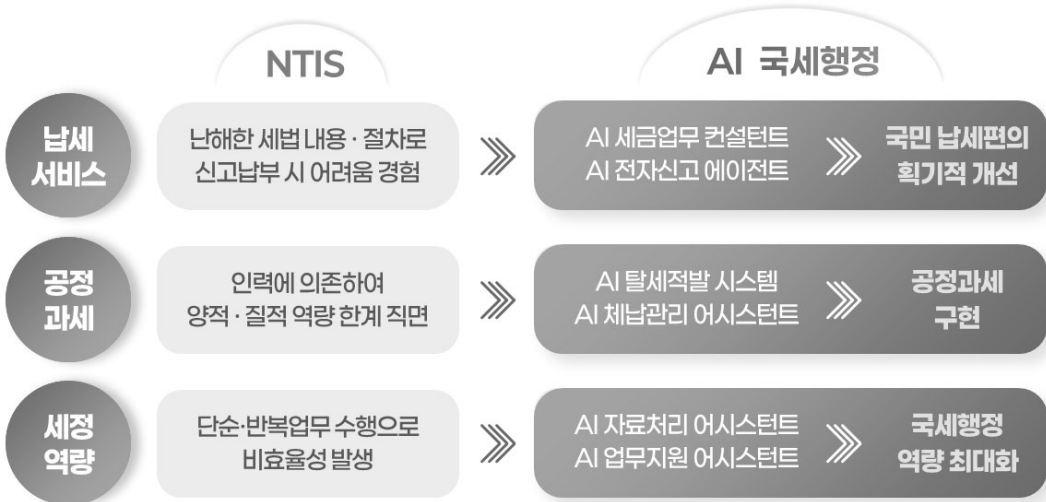
③ 악의적 탈세·체납에 강력하게 대응

-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와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
 - * 세무조사 중 자료제출 거부행위에 대해 매출액에 비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0.3% 이내)
- 세무서 체납추적전담반을 확대('24년 25개 → '25년 73개)하고, 국세체납액 징수에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제도를 신설*
 - *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25. 6. 15.시행)

2 중점 추진과제

1 AI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가 AI 대전환으로 세계 최고의 AI 국세행정 구현



- (추진 방향) 대대적 투자와 개혁을 통해 납세서비스, 세무조사, 체납관리, 신고관리 등 모든 세정 프로세스를 AI 중심으로 전면 개편

AI 대전환으로 달라질 국세행정의 모습

대표과제	주요 내용
AI세금업무 컨설턴트	세법·예규·판례 등 방대한 세무지식을 학습한 생성형 AI가 개별 납세자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상담 서비스를 상시 제공 →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납세자가 무료 상담 후 편리하게 신고
AI탈세적발 시스템	과거 조사사례와 조사분야 업무 숙련자의 노하우를 학습한 AI가 사람이 찾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탈루혐의점도 예측하고 조사대상자 선정 → 조사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종탈루까지 탐지하여 탈세대응 역량 강화
AI자료처리 어시스턴트	AI 에이전트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대량의 과세자료를 분석하고 과세실익을 스스로 판단하여 결의서까지 자동으로 작성 → 대량자료 검토에 소요되는 직원 업무량을 감축하여 핵심업무에 전념 가능

- (추진 일정)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여, '26~'27년 과제 개발 및 '28년 본격적인 AI 서비스 개통 추진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시, ISP사업('25년) → ISMP사업('26년) → 본사업 수행('27년)

나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치밀하게 준비

- (인프라 구축) 과세정보를 보호하고 국세업무 특화모델을 활용하기 위해, 최신 GPU를 확보하여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 구축
 - 국내·외 최신 생성형 AI 모델(Foundation Model) 적용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기술검증을 실시하여 국세청에 최적화된 AI 모델 도입
- (AI 과제개발) 내부 컨트롤타워로 「AI 대전환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AI 대전환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세부과제를 발굴
 - AI 전문가의 자문과 납세자 의견을 반영*하여 과제 보완·개선
 - * 「미래혁신 추진단」 AI 전환 분과 외부위원,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 의견 수렴

AI 대전환 [3대 분야 - 10대 과제]		
납세서비스 혁신	공정과세 구현	세정 효율화
① AI 전자신고	④ AI 신고검증	⑦ AI 신고관리
② AI 세무컨설팅	⑤ AI 탈세적발	⑧ AI 자료처리
③ 과세자료 사전공개	⑥ AI 체납관리	⑨ AI 업무지원
		⑩ AI 민원로봇

다 AI 대전환을 위한 추진기반 마련

- (AI 인력 양성) 석·박사급 AI 전문가 충원을 추진하고, 생성형 AI 실무사례 발굴과 변화관리를 이끌어갈 AI 크루*(Crew) 300명 선발
 - * 본청·지방청·세무서 직원으로 구성하여 국세청 내 'AI 붐(Boom)' 조성에 활용
 - AI 인재 선발과 전문가 육성을 담당하는 'NTS AI College'를 운영하고, 대학원 위탁·전문기관교육 등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 (보안체계 고도화) 화이트 해커*를 활용하여 해킹 대응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유출 실시간 관리 및 AI 보안감사로 내부 자료유출 방지
 - * 해킹기술을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정보보안 전문가
- (데이터 관리) AI 학습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록 및 증빙자료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기록관리 정형화 추진

2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합리적 세정 구현

가 빠른 민생 회복에 세정역량 집중

- (다각적 세정지원) 경기침체, 재난·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으로 자금유동성 제공
 - * '25.7월 신청분부터 납세담보 면제기준 7천만원 → 1억원 상향 적용
- (세무검증 부담 완화) 영세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내용확인 선정 제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실시
 - *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소상공인(개인+법인)에 대해 '26년 상반기까지 적용
- (납부수수료 인하)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일괄 인하하고, 영세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절반 이하로 대폭 인하*
 - * 연매출 1천억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는 영세납세자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대상에서 제외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인하(안)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행	조정	현행	조정
영세자영업자	0.8%	0.4%	0.5%	0.15%
일반 납세자		0.7%		0.4%

- (간편환급 개선)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등의 소득세 환급금을 빠짐없이 안내하고, ARS 환급신청 시스템 신규도입 등 환급 편의 개선*
 - * 환급전용 핫라인을 개설하여, 환급신청 중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서비스에 즉각 반영
- (장려금 신청·지급) '25년 상반기분 신청부터 전 연령 자동신청*을 최초 실시(사전동의한 60만가구 대상)하고, 법정기한 보다 앞당겨 지급
 - * 사전동의하면 다음 2년간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 절차없이 장려금 자동 신청
- (국세데이터 개방) 민생정책 수립에 필요한 각종 경제지표와 기초자료를 행정수요에 적합한 형태로 관련부처·지방자치단체에 제공

국세데이터 제공방안

분야	주요 내용
경제지표	지역·업종별로 세분화한 매출, 사업자 개·폐업 현황 등을 매일 제공
국세통계	연 단위로 공개하던 주요 세목 국세통계를 신고종료 직후 2~3개월 내 신속 공개
기초자료	근로·사업·기타소득만 제공하던 원천세 기초자료를 연금소득까지 추가 제공



나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

- (신성장 뒷받침) AI 중소기업에 R&D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안내하기 위한 전용상담 창구를 신설하고, 세무검증도 최소화*
 - *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은 정기조사 선정 제외, 그 외 AI 중소기업은 최대 2년간 정기조사 유예
- (수출기업 지원) 관세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자금유동성 지원*, 세무검증 배제 등 실시
 - *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중간예납 2개월), 환급금 조기지급(신고기한 후 30일→5일)
- (해외진출기업 보호) 이중과세와 같은 현장의 고충은 전략적 APA* 실시와, 양자교류·다자회의체 참여 등 실용적 세정외교로 해결
 - * 이중과세 위험을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사전 제거하는 제도로, 관세 등에 취약한 산업군 적극 추진
 - 현지 세무애로는 국세관이 사안별 액션플랜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교민·진출기업의 세정수요가 많은 지역에 국세관 신설 추진
- (우리 술 육성) 우수 주류를 발굴하여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K-SUUL AWARD*」를 개최하고, 국제행사를 통해 우리 술 적극 홍보
 - * 신청(9.1~9.15.) 결과 175개 업체에서 366종 출품, 1~2차 심사 거쳐 최종 12종 선정 계획

다 납세자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는 친(親) 납세자 세정

- (세무조사 관행 혁신) 정기 세무조사 시 조사팀이 기업에 상주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조사방식을 납세자 관점에서 개선
- (세정 집행과정 관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을 확대*하여 세무조사 집행과정의 납세자 불편사항 적극 해소
 - * 업종별 참관대상 수입금액 기준(現, 도매 6억원·제조 3억원 이하 등)을 대폭 상향 추진
- (제도개선과제 발굴) 세법이 국민들의 실생활을 반영하고, 납세자 시각에서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발굴·건의
 - * (예) 복잡한 세금 계산구조 및 신고서식 간소화, 생활밀착형 소득공제 발굴 등

3 조세정의의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 실현

가 국세 체납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

- (전수확인 실시)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여 체납자(133만명, 110조원) 전수 실태확인을 실시하고, 유형분류*를 통해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

* 실태확인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계 곤란형 체납자와 고액·상습체납자로 구분

「국세 체납관리단」 개요

- (내용) 3년간('26~'28년) 실태확인 종사자(기간제 근로자) 2천명 채용하여 체납자 전수확인
- (역할) 체납사실 안내, 생활실태 확인, 납부의사 및 납부계획 확인 등

- (생계 곤란형 체납자 관리) 자력 회생이 어려운 체납자는 생계급여·일자리와 같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납부의무소멸 등으로 재기 지원

의원입법안으로 제출되어 논의 중인 '생계 곤란형 체납자 「납부의무소멸」 개정안'

- (대상) '25.1.1.이전 발생한 종소세·부가세 체납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무재산·폐업자
- (연계) 금융면책* 제도와 함께 공공 채무조정을 병행하여 정책 시너지 극대화
- *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배드뱅크)]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민간채무 탕감

- (악의적체납자 엄단) 고액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 → 추적조사 → 체납징수'까지 논스톱 실시하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가동

* 서울청·중부청 각 2반, 나머지 5개 지방청 각 1반 설치(1반당 6명씩 총 54명)

-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자는 국세청·지자체 합동대응팀을 구성하여 탐문과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노하우 공유 등 징수활동 공조

- (징수인프라 강화)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범위* 확대(금융실명법 개정) 및 추적조사 전담인력 증원 추진

* (현행) 체납자, 배우자 또는 친·인척 → (확대) 체납자가 대표자인 법인 및 체납법인의 대표자

- 호주 등 외국 과세당국과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새롭게 체결하여 고액·상습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 환수 기반 마련

* 호주와 MOU 신규 체결('25.9월), 아시아 지역 국가와 신규체결 추진 중

나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세무조사 운영

- (조사규모 관리) 조사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대·내외 경제여건과 인력 상황,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

* ('22년) 14,174건 → ('23년) 13,973건 → ('24년) 13,980건 → ('25년계획) 14,000건

수준

- (성실신고 지원)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 시 유의사항을 홈택스에서 사전 안내하여 납세자의 반복적 신고 실수 방지

다 악의적·지능적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

- (불공정행위 척결)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기업의 세금탈루와 주식시장을 교란시키고 사익을 편취하는 불공정 자본거래에 엄정 대응
 - * 시세조종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경영지배권 남용 기업 등
- (민생침해 엄단)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 점검
 - * 경제적 약자인 서민을 대상으로 고율 이자 수취,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는 불법사금융업자 등
- (신증·역외탈세 근절)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하거나 위장거래를 통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국부유출 행위 등 강력 대응
 - * 현금매출을 고의로 신고 누락한 뒤 가상자산 취득 및 해외 인출하여 수익 은닉 등
- (부동산탈세 차단) 초고가주택 거래, 외국인·연소자 주택취득 과정의 자금출처와 고가 아파트 증여세 회피 등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 집중 검증
 - *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담보된 대출·전세금을 부모가 대신 변제하는 행위 등

라 초국가 범죄 수익 검증 강화

- (탈루혐의 검증) 캄보디아 스캠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법인들의 국내 관련 업체에서 세금탈루 혐의를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
 - * 속임수를 이용해 상대방의 돈이나 정보를 가로채는 사기범죄(예, 로맨스스캠, 피싱 등)
 - 캄보디아 법인의 국내 거점과 국내 관련인의 탈세혐의까지 조사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
- (은닉재산 환수) 동남아 등 해외 범죄수익 은닉 국가에 대해 국제공조 및 정보활동을 강화하여 역외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

4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세수확보

가 소관 세입예산 조달을 위한 치밀한 세수관리

- (세수현황) '25.9월 누계 세수실적은 283.1조원으로 전년(249.5조) 보다 +33.6조원 증가, 추경예산비 진도비 78.1%로 전년보다 +2.1%p 증가

└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및 세수실적 ┘

'24년 실적	'25년 추경예산	9월 누계 세수			세수 진도비		
		'24년	'25년	증감	'24년	'25년	증감
328.4조	362.6조	249.5조	283.1조	+33.6조	76.0%	78.1%	2.1%p

- (관리방향) 하반기 주요세목 신고·납부 상황과 국내외 경제여건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고액환급 등 우발요인을 치밀하게 관리

나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여 자납세수 극대화

- (신고안내 강화)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확대 제공하여 업무무관비용 공제, 공제한도 초과 등 실수로 인한 과소신고 방지
- (간편신고 확대) 복잡한 세법 규정으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양도소득세·상속세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개선

· (양도세) 물건정보, 양도일자 등 최소정보 입력만으로 신고유형·적용세율 자동선택
 · (상속세)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을 별도로 입력할 필요 없이 전자신고 시 자동채움

다 공제·감면 제도 관리로 재정누수 최소화

- (사후관리 실시) 보유 과세자료와 연계하여 신고검증을 강화하고, 신규 검증항목을 지속 개발하는 등 공제·감면 악용사례* 원천 차단
 - * 사망자·소득기준 초과자 등 부당 인적공제, 불법 브로커를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공제 등
- (조세지출 정비) 현재 시행 중인 조세지출 전(全) 항목을 심층 분석·평가하여 실효성이 낮은 공제·감면제도 발굴 및 정비 건의



3 추진 기반

1 신뢰가 공고하게 자리잡은 조직문화 확립

가 일할 맛 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직원보호 강화)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을 신설하여 지속적 악성민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 전담
 - * 5급 변호사 2명, 6급 세무직 2명 총 4명으로 구성
 - 아울러, 청사 안전요원을 전 관서(60개 → 133개)로 확대 배치 추진
 - * '26년 하반기, 16개 관서에 추가 배치할 예정이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 (직원복지 향상) 건강 검진비 지원 확대, 심리상담 의무화 등 악성민원과 과로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복지제도 개선

나 업무성과 극대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직원처우 개선) 부과·징수·송무 분야 포상강화와 중요직무급 대상*·인원 확대를 추진하여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보강
 - * 본·지방청 중요직위, 악성민원 전담 부서, 세무서 격무·기피부서 등
- (인사관리 합리화) 격무부서 근무자가 성과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서 잔류 예외 허용, 경력가점 부여 등 인사관리규정 개정
- (적극행정 우대)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개편*하고, 우수공무원 선발을 확대하여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 강화
 - * 직원들이 선호하는 유·무형의 다양한 보상 신설, 전용화면 개설 등

다 바르고 깨끗한 청렴문화 실현

- (이해충돌 방지) 업무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자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검증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본인·친족에 대한 업무처리 제한
- (비위행위 근절) 세무조사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지방청 교차감찰을 실시하고, 비위징후에 정보역량을 집중하여 감찰활동의 실효성 제고

2 속도감 있는 성과창출을 위한 「미래혁신 추진단」 운영

가 민·관 합동으로 현장중심 미래 혁신과제 발굴

- (추진 배경) AI 대전환 등 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과제를 마련하고 발전시켜 나갈 「미래혁신 추진단」 출범(8.14.)
- (운영 방향) 분과별 수시·정기회의를 통해 과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민간 전문가 의견과 국민자문단 제안을 반영하여 추진과제를 확정
 -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과제의 경우 즉시 이행 후 대외성과 공개

국세청 미래혁신 추진단 분과별 주요 추진과제(안)

분과	추진 과제	세부 과제
AI 전환	① AI 기반 국세행정 서비스 혁신	AI 세무컨설팅·신고납부·민원 서비스 도입 등
제도 개선	② 조세체계 합리화 위한 과제발굴	공제·감면 제도 재설계, 복잡한 규정 간소화 등
조세 정의	③ 민생·경제교란 탈세 엄정 대응	조사실효성 제고, 합리적 조사방식 혁신 등
민생 지원	④ 중소기업·민생 활력 회복 지원	소상공인 세정지원, EITC 집행효과 제고 등
국세 정보	⑤ 국세데이터 기반 경제동향지표 개발	Micro 경제 및 수출입·고용 관련 동향지표 개발

- (성과 발표) 연말까지 분과별로 확정된 추진과제와 추진성과·이행계획·국민의견을 망라한 「미래혁신 종합방안」 마련해 대국민 보고*
 - * 종합방안 발표, 국민세정자문단 의견 반영사례 발표, 우수활동자 표창

나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 운영으로 국민 효능감 제고

- (자문단 구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집하기 위해 각 분과별 특성에 따라 직군·연령·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선발*(분과별 20명, 총 100명)
 - * (성별) 남 61%, 여 39%, (연령) 20대 18%, 30대 35%, 40대 25%, 50대 이상 22%
- (운영 방식) 자문단 전용 온라인 소통창구를 개설하여 주요과제를 알기 쉽게 공유하고 활발한 의견개진을 유도하여 과제개선에 반영

근로·자녀장려금 5월에 깜빡했다면, 12.1.까지 꼭 신청

- 국세청, 2025. 11

- (개요)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 신청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신청기한)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올해는 12.1.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별 지급률

정기신청(5월)	기한 후 신청(6개월)	신청 기한 경과
2025.5.1.~6.2.	2025.6.3.~12.1.	2025.12.2. 이후
산정액의 100% 지급	산정액의 95% 지급	신청 불가

-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2024년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4,4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6.1.기준)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은 산정된 장려금의 50% 지급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 재산합계액은 토지·건물·자동차 등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예금의 잔액과 주식가액* 및 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한 금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 상장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액
-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 또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3.10.이후 '24년 귀속에 대한 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추가로 제출되었거나,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홈택

스(PC·모바일)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액·시기) 정기 신청(5월)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소 3만 원부터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까지이며,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부양자녀 한 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입니다.
- 12.1.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가구별 신청요건을 심사하여 산정액의 95%를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한편,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였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6.1.잔액)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궁금하신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상담사(평일 9시~18시) 또는 보이는 ARS(평일 및 휴일 24시간)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체험수기) 아울러, 국세청은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11.17.까지 체험수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체험수기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응모할 수 있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여 연말에 시상(총 시상금 1천만 원) 할 예정입니다.

참고 1 신청자격 및 지급액

- 신청자격
 - 2024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의 가구 유형별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
 - ① 홑벌이가구란, 배우자¹⁾·18세미만 부양자녀²⁾·70세이상 직계존속³⁾ 중 1명이상 있는 가구
 - ② 맞벌이가구란,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이상인 가구
 - ③ 단독가구란, 배우자·18세미만 부양자녀·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① 홑벌이가구	② 맞벌이가구	③ 단독가구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총소득기준 (부부 합산)	3,200만원 미만	4,400만원 미만	2,200만원 미만	7,000만원 미만

*총소득이란, '24년도 중 발생한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기타, 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재산기준 (소득발생연도 61기준)	가구원 전체의 토지·건물·자동차 등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예금의 잔액, 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2억 4천만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은 장려금 50% 지급)
-----------------------	---



참고 3 주요 문답 사례

사례 1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 2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 주택 전세보증금은 실제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므로, 실제전세금이 적은 경우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을 임차(거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100%)으로 평가합니다.

사례 3 신청한 장려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장려금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입력된 계좌가 압류된 경우 장려금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례 4 부정수급자를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그리고, 비밀보장은 되나요?

- 홈택스에 「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 홈택스에 접속*하여 증빙 등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됩니다.

* 홈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제보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